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51호)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1호)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93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6
1.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철수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박형수의원안)	6

I. 개요

1.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4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1.
- (3) 회 부 일 : 2025. 1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

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2.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5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11. 24.
- (3) 회 부 일 : 2025. 11.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가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3.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9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1. 13.
- (3) 회 부 일 : 2026. 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철수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박형수의원안)

현 행	안철수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박형수의원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8조의3)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 감면기한 및 감면율: <u>10년간 50%</u> ☐ 원천징수비율: <u>50%</u> ☐ 적용기한: <u>2028. 12. 31.</u> * 2025년 법 개정 전 적용 기한: <u>2025.12.31.</u>	☐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기한 및 감면율: <u>처음 3년: 100% 감면, 4년~6년: 75% 감면, 7년~10년: 50% 감면</u> ☐ 원천징수비율: <u>감면되는 세액을 제외한 세액의 100%</u>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당시 취업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해서도 적용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 12. 31.(박형수의원안)</u> <u>2031. 12. 31.(송석준의원안)</u> ☐ 시행일: 공포일(박형수의원안) 2026.1.1.(송석준의원안)

* 안철수의원안 2025. 11. 21. 제출(의안번호 14451), 송석준의원안 2025. 11. 24. 제출(의안번호 14511), 박형수의원안 2026. 1. 13. 제출(의안번호 15993)

□ 3건의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안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처음 3년은 100% 감면, 4년부터 6년까지는 75% 감면, 7년부터 10년까지는 50% 감면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제외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려는 내용임.

또한, 안철수의원안은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며, 박형수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송석준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임.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함.

동 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이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그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이러한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4억원이며, 2026년에는 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감면액	15	24	92	9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계 각국이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¹⁾ 중인 가운데 내국인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은 증가하는 반면²⁾,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저조³⁾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⁵⁾가 시행 중이므로, 국내

1) 주요국 대표 해외인력 유치·네트워크 사업

독일 훔볼트재단 (해외 포닥·중견·리더)	일본학술진흥회 (해외 포닥·중견·리더)	중국 천인계획 (해외 포닥·중견·리더)	영국 뉴턴 국제 Fellowship (해외포닥 유치)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전세계 2만9천여명 동문 회원 보유 (노벨상 수상자 50명)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단기(7일~12개월) 프로그램 다수 운영	- (포닥) 인당 1.7억원 ~2.2억원/년 지원 - 주거지원, 자녀학교 지원, 배우자 일자리 제공 등	- 인당 7~8천만원/년 지원 - 연구종료 후 10년까지 매년 £6,000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2019. 2, p. 1.

2)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인력들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움직이는 이동 흐름이 뚜렷하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한인 인재들은 미국에 대부분 체류하거나,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이동을 보인다고 분석 (자료: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 96)

3) 전체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자의 졸업 후 미국 체류계획이 있는 비중은 2013년 59.1%, 2014년 60.7%, 2015년 62.9%, 2016년 66.7%, 2017년 68.5%, 2018년 63.6%임. (자료: NSF, Survey of Earned Doctorates)

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북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결정에는 세제상의 유인 외에도 연구 환경, 개인의 직업적 성취 및 향후 경로, 기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만을 통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

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⁶⁾,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치’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국내 복귀 결정유인, 장애 요소 및 복귀 결정 과정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철수의원안은 소득세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주·취업 중인 내국인 우수 인력과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연구 생태계의 훼손 우려⁷⁾, 수혜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한 특례요건의 형식적 구비 등 도덕적 해이 리스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수준이 현재 10년간 50% 감면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1. 9.

7) 국내 학계수준보다 열위에 있는 외국대학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우대받게 되는 문제, 국내 대학원 진학 대신 해외 학위취득후 국내복귀를 시도하는 문제 등 발생 가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10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편, 안철수의원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박형수의원안은 2030. 12. 31.까지로, 송석준의원안은 2031.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2025년)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그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박형수의원안 및 송석준의원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할지 여부 및 그 기한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안철수 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36.8억원, 2038년 18.4억원 등 12년간 총 800.4억원(연평균 6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송석준 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6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18.4억원, 2041년 18.4억원 등 15년간 총 1,104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안철수의원안	△36.8	△73.6	△110.4	△101.2	△92	△82.8	△73.6		
	2034	2035	2036	2037	2038	누적	연평균		
	△64.4	△55.2	△55.2	△36.8	△18.4	△800.4	△66.7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송석준의원안	△18.4	△36.8	△55.2	△73.6	△92.0	△110.4	△110.4	△110.4	△110.4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누적	연평균	
	△110.4	△92	△73.6	△55.2	△36.8	△18.4	△1,104	△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